

## 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□ **대상펀드명** : 트러스톤제갈공명연금저축증권투자신탁(주식)

□ **변경 사유** :

1. 운용전문인력 변경 (정인기, 안홍익 → 안홍익, 조상현)
2. 투자 가능한 유동성자산 중 환매조건부 매수 추가
3. 제2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
4. 자본시장법 및 세법 변경 사항 반영

□ **효력발생일** : 2015. 5. 27.

□ **변경 내용**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-	10. <u>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(소규모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/u>
<b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b>		
5. 운용전문인력	정인기, 안홍익	안홍익, <u>조상현</u>
가. 책임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2015.04.30</u>
5. 운용전문인력	-	<u>정인기 : 2013.5.2 ~2015. 5. 26</u> <u>안홍익 2015. 5. 27~현재</u>
나.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	-	<u>정인기 : 2012. 8.9 ~2015. 5. 26</u> <u>안홍익 2015. 5. 27~현재</u>
[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] - 트러스톤증권모투자신탁 [주식]	정인기 : 2012.8. 9. ~ <u>현재</u>	<u>정인기 : 2012. 8.9 ~2015. 5. 26</u> <u>안홍익 2015. 5. 27~현재</u>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 대상	투자 가능한 유동성자산 중 환매조건부 매수 추가	<u>환매조건부 매수</u>

<p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/p>	<p>제2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</p>	<p><u>2015.05.09 기준</u></p>
<p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다.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/p>	<p>-</p>	<p><u>다른 자투자신탁의 환매수수료 삭제</u></p>
<p>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 2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</p>	<p>공제제도: 연간 저축금액 중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12%</p> <p>분리과세한도 : 1,200만원(공적연금 소득 제외)</p> <p><u>특별 중도해지 (연금외수령) 사유:</u> 천재지변,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,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치료·요양,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인·허가 취소, 해산결의, 파산선고</p> <p><u>특별 중도해지 사유시 과세 :</u> 기타소득 13.2% 분리과세 (지방소득세 포함)</p>	<p>공제제도: 연간 저축금액 중 400만원 한도로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</p> <p><u>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700만원 한도로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 다만, 「소득세법」 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.</u></p> <p>분리과세한도 : 1,200만원(공적연금 소득 제외)</p> <p><u>단, 의료목적으로 인출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적용</u></p> <p><u>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:</u> 천재지변,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,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</p> <p>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치료·요양,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인·허가 취소, 해산결의, 파산선고</p> <p><u>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:</u> 연금소득세 5.5~3.3%(지방소득세 포함)</p>
<p>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</p>		

1. 재무정보	제2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<u>2015.05.09 기준</u>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제2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<u>2015.05.09 기준</u>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제2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<u>2015.05.09 기준</u>
<b>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b>		
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. 의무해지		<u>(5)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.</u>
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나. 임의해지		<u>(2) 집합투자업자는(1)의 ③ 및 ④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, 합병 및 모자형전환,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해야 합니다.</u>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. 정기보고서 (1)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		<p><u>③회계감사</u>  <u>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 말일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.</u>  <u>다만,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습니다.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<u>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 원 이하인 경우</u></li> <li>- <u>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 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</u></li> </ul>